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1010012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05-0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1-12-31

[www.eyeavenue.co.kr](http://www.eyeavenue.co.kr)

lncavenue@lncavenue.com

## 아이에비뉴

###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엘앤씨에비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식회사 엘앤씨에비뉴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8길 89, 지하1층(회현동1가)

대표전화번호 : 02-556-3551

가맹사업부전화번호 : 02-556-3551

대표팩스번호 : 02-556-3552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신설)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4] 가맹본부 재무제표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서울특별시 종구 퇴계로8길 89, 지하1층(회현동1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07.04	2008.07.01	이남호	02-556-3551	02-556-3552
	법인등록번호	110111-3928847	사업자등록번호	120-87-2999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이남호	아이에비뉴	서울특별시 종구 퇴계로8길 89, 지하1층(회현동1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이남호	02-556-3551	02-556-3552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아이에비뉴"라 한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이에비뉴	-
상 호	아이에비뉴 ****점	-
상표(서비스표)	<b>EYE AVENUE</b>	09류 상표 등록번호 : 40-0802895-0000 35류 상표 등록번호 : 41-0190559-0000
광 고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050,182	5,869,060	1,181,121	4,876,826	-107,500	-122,509
2022년	6,903,314	5,434,965	1,468,348	5,771,945	300,698	287,227
2023년	7,172,499	5,406,794	1,765,704	6,037,249	369,156	297,355

그 근거자료는 별첨 4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별첨4] 참조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남호	대표이사	2015.09.01 ~ 현재	(주)엘앤씨에비뉴 대표이사	업무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23

● 12월31일자 퇴사자 1명 포함(임원 1명 + 직원 23명 = 총 24명)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아이에비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점 운영 사업을 경영한 사항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 내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상표출원자 상표등록자	등록만료일
EYEAVENUE	상표	출원:2008.08.18 등록:2009.10.08	출원:40-2008-0040325 등록:40-0802895-0000	(주)엘앤씨 에비뉴	2029.10.08
EYEAVENUE	서비스표	출원:2008.08.18 등록:2009.10.08	출원:41-2008-0022207 등록:41-01905590-0000	(주)엘앤씨 에비뉴	2029.10.0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아이에비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3월 3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8년 7월 1일)

### 2. 해당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정광석	2011.03.30 ~ 2011.08.1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7-24 인벡스빌딩 지상 3층 302호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정광석	2011.08.18 ~ 2013.07.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대우월드마크용산 102-1404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정광석	2013.07.13. ~ 2015.08.3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606호(여의도동, 삼보빌딩)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이남호	2015.09.01. ~ 2015.11.3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606호(여의도동, 삼보빌딩)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이남호	2015.12.01 ~ 2019.06.3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4, 3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주)엘앤씨에비뉴	아이에비뉴 (EYE AVENUE)	이남호	2019.07.01 ~ 현재	서울시 종구 퇴계로8길 89, 지하1층 (회현동1가)

### 3. 해당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안경, 선글라스, 렌즈
아이에비뉴	안경	안경, 선글라스, 렌즈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아이에비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4	5	8	3	5	7	2	5
서울	-	-	-	-	-	-	-	-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1	1	-	1	1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	1	1	-	1	1	-	1
울산	-	-	-	-	-	-	-	-	-

경기	4	1	3	3	-	3	3	-	3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1	-	1	1	-	1	1	-	1

## 5. 최근 3년간 [아이에비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	0	2	0	0	4
2022	4	0	1	0	0	3
2023	3	0	1	0	0	2

## 6. [아이에비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sup>④</sup>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2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1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1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 가맹점이 5곳 미만이고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가 없어서 미기재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2	2,991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소계					
	비공개					
판촉	소계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귀하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b>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b>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엘앤씨에비뉴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점 사업자 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사항 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사항 없음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 해당사항 없음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손괴, 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이에비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5,500천원의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임차보증금, 시설비, 인테리어비, 관리비, 광고비, 교육비, 점포의 공사·수리비, 물품대금 등 위 가맹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가입비	1,100	계약 체결 즉시	오픈 전 가맹점주의 서면 요청 *반환사유 발생 시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설을 위한 비용 지출, 소모성 비용
	기술및 경영지원비	1,100	계약 체결 즉시	반환되지 않음	20%
	개설지원비	1,100	계약 체결 즉시	반환되지 않음	20%
	매뉴얼및 자료제공비	550	계약 체결 즉시	반환되지 않음	10%
최초교육 훈련비	최초교육 훈련비	1,650	계약 체결 즉시	반환되지 않음	30%
총계		5,500	-	-	-

2) 귀하가 가맹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5,5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850	부가세포함
교육훈련비	1,650	부가세포함
보증금	0	-
합 계	5,500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sup>2</sup> 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가맹본부	5,280	176	- . 계약시: 50% - . 중도금(계약후 1개월이내): 30%	미 공사 시 99 m <sup>2</sup> (30평) 기준	
집기/기기		11,000	366	- . 완공시(영업 개시 1일전): 20%		
간판		550		설치 전		
초도상품		22,000		상품 공급 전	미 공급 시	
총계	-	38,830		-		

※ 매장의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이 표에는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실외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상권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입지 여부 검토 → 가맹희망자에 가부 여부를 통보 (가맹희망자가 당사의 가부 여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 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르는 추가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li> <li>-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li> <li>- 만20세 이상일 것</li> <li>-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li> </ul>	좌동(左同)
종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li> <li>-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li> <li>- 만20세 이상일 것</li> <li>-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li> </ul>	좌동(左同)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 및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경, 선글라스 및 기타 안경 관련 설비 및 상품류에 대하여는 물품의 초도공급 시 다음 물품의 일정 비율은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가맹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에비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30%(가맹본부):70%(가맹점사업자)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 이미지, 상품광고
	가맹본부	30%(가맹본부):70%(가맹점사업자)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상품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맹점사업자)	-	-	-	가맹점모집 광고 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맹점사업자)	-	-	-	
교육비	가맹본부	-	-	-	-	별도비용 없음
관리비	가맹본부	330	매월 5일	없음	후불제	-
관리프로그램 사용료	자율선택	110	매월 말	없음	후불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기준: 2023년)	내용 <sup>②</sup>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sup>③</sup>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sup>④</sup>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는 없습니다.

####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아이에비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 계약상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

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의 조치사항

귀하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아이에비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및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비품, 집기 등을 철거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인 (주)엘앤씨에비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절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설비, 기타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선정한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것인 만큼 가맹본부가 어떠한 강요나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초도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다음의 표에 기재된 물품을 일정부분 당사로부터 초도공급 받은 후 가맹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sup>①</sup>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명칭 <sup>②</sup>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sup>③</sup>	경제적 이익의 내용 <sup>④</sup>	비고
		해당사항 없음		
		계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아이에비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않습니다.

상품 · 용역 <sup>①</sup>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sup>②</sup>	금액 <sup>③</sup>	비고 <sup>④</sup>
			해당사항 없음		
			계		

2) 당사가 [아이에비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계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일체	<p>상표권의 보호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가맹점 브랜드 전체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p> <p>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만 취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p> <p>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과 품질 등이 동일하다는 가맹 본부의 서면승인을 받아 타 제품을 사입할 수 있습니다.</p> <p>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공급 받은 물품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p>	<p>제한내용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회 위반 : 구두 경고</li><li>-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li><li>-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li></ul> <p>다만, 사입 제품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승인이 없이 공급받은 물품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질이 동일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p>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최종소비자에게 소매가격표에 의한 소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소매업자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인터넷 및 흡쇼핑 판매업자 포함)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과도한 덤핑판매(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의 30% 초과 할인판매) 및 이를 위한 광고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이를 위자 또는 변작한 유사상품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아이에비뉴와 동일한 업종(안경, 선글라스 등 판매, 안경점)	아이에비뉴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반경 직선거리 1km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 아웃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간접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간접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서면 통지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이에비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아아에비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영업표지	취급품목 <sup>②</sup>	가맹점과의 구분 <sup>③</sup>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유통업체명 <sup>②</sup>	주소	취급품목 <sup>③</sup>	가맹점과의 구분 <sup>④</sup>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알수없음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30%	0%

※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어느 가맹점도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별로 오프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이 조금씩 달라 3곳 평균 추정치입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아이에비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 기간도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서비스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조달하여 용도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 24조 제 3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 24조 제 5항을 위반한 경우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3개월에 2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상품.자재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경영지도나 경영지침을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OEM, 협력사 제품의 할인 판매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협력사와의 거래금액을 2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제휴 관계의 미참여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현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상 귀하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당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대표자변경)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통지 → 가맹본부의 승인여부 심사(신규사업팀) → 가맹본부의 승인 결정 서면통지 → 양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양도, 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승인으로 양도양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에 영업양수인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 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능	피상속인의 계약상	상속개시 사실 가맹본	상속인 가맹비 면제

		모든 권리 · 의무	부에 서면 통지	단, 교육비, 물품대금, 관리비, 광고비 기타 교육 · 훈련 참가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대리행사	불가능	불가능	-	-
위탁	불가능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 내용을 인쇄, 복사 기타 배포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안경, 선글라스 등 판매, 안경점 등 동종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결정 →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이에비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연중무휴 ※ 설(신정/구정), 추석연휴 휴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내외	직접 근무	점주와의 관계 : 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 사전승인 필(必)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이에비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 관련 필요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당사자 일방의 부담 또는 쌍방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70% (가맹점 수로 균분)	행사계획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행사참여 결정 → 행사종료, 최종분담금 확정	행사일시, 장소, 대상, 규모등에 따라 달라짐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70% (가맹점 수로 균분)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의 가족, 직원 기타 관계인)는 가맹계약 및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정보 또는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본인 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영업비밀 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맹비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부담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1m<sup>2</sup>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 1일 3,000원씩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점포면적 X 지체일수 X 3,000원)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개점 후 본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거나 해지한 경우(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위약금: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 × 2.2% × 잔여기간 (월)(부가세포함)

- 4)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2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문의 접수</li> <li>-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li> </ul>	-	
가맹사업의 설명 ·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서 설명 및 제공</li> <li>- 가맹희망자 상담(내사 또는 방문)</li> </ul>	-	
정보공개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사항 검토</li> <li>-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li> </ul>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제공</li> </ul>	계약체결 14일전	
가맹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 개설 승인</li> <li>- 가맹 계약서 작성 및 체결</li> <li>- 가맹계약서 1부 교부/보관</li> </ul>	D-42(1일)	8~9페이지 참조
점포설계/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테리어 협력업체 지정/수행</li> <li>- 설계도 및 견적서 제출</li> <li>- 인테리어 시설 공사 계약체결</li> </ul>	D-41~38(4일)	
광학기기 및 초도상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기 협력업체 견적 및 계약</li> <li>- 초도상품 구성 협의 및 결정</li> </ul>	D-37~34(4일)	
실내외 공사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li> <li>- 광학기기 및 초도상품 입점 및 전시</li> </ul>	D-33~24(10일)	
인테리어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실시</li> </ul>	D-23~4(20일)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 운영교육 실시</li> </ul>	D-3~1(3일)	
점포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li> </ul>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		

		<p>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p>	<p>부담액 은 지급 하지 아 니하거 나 이 미 지 급 한 경우에 는 환 수 가 능</p>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 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이에비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이에비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교육	1일 (8시간)	별도비용 없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협의로 개점 후 일시/장소/대상 선정
보수교육	2일 (16시간)	별도비용 없음	상동(上同)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일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sup>②</sup>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0.9개월(331일)	총 5개 직영점 운영기간 평균

● 대전점은 2022년 9월 말경 화재로 영업중단 – 2023년 6월12일 영업재개(파일 첨부)

### 3. 바로 전 사업연도 2023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sup>③</sup>
577,196	예시1)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POS상 매출을 근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은 \_\_\_\_\_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가맹희망자)**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인)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_\_\_\_\_ 대표자명: \_\_\_\_\_(인) 제공일: 20 년 월 일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_\_\_\_\_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가맹희망자)**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인)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_\_\_\_\_ 대표자명: \_\_\_\_\_(인)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 가맹본부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